

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1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규사업 편성(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(매입) 외 1건)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1,990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%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을 1,990백만원 감액하여
- 나. 정책사업비를 14,402백만원, 예치금을 46,339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- 다.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지출 계획						
항목	당초 계획 (A)	1차 변경	2차 변경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C/A*100)	
계 (순지출)	60,746 (10,361)	60,746 (12,417)	60,746 (14,407)	- (4,046)	- (39.1%)	
정책사업비	계	10,356	12,412	14,402	4,046	39.1%
	비용자성 사업비	5,856	7,306	9,296	3,440	58.7%
	융자성 사업비	4,500	5,106	5,106	606	13.5%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	5	5	-	-
재무활동	예치금	50,385	48,329	46,339	△4,046	△8.0%

- 1차변경 :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지원 606백만원 신규 편성,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 1,000백만원 신규 편성, 지하도상가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50백만원 신규 편성(예치금 2,056백만원 감액)
- 2차변경 :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(매입) 1,890백만원 신규 편성,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100백만원 신규 편성(예치금 1,990백만원 감액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박승미 (☎ 2133-3517)